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검토보고서

2024. 8. 29.(목)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24. 8. 16.

○ 회부일 : 2024. 8. 19. (의안번호 : 24-10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존속 기한 연장 및 조례에 규정된 법령 명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정정하고,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양성평등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40조의2)
- 나. 현행 상위법령 명칭 정정 등 용어 정리(안 제18조제4호, 안 제40조제1항, 안 제54조제10호)
- 다. 기금의 사용범위 확대(안 제41조의2)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4. 7. 11.~ 7. 31.(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조례에 규정된 법령 명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정정하고,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 하여 양성평등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18조제1항제4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 제40조제1항 중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제5항"을 "법 제42조제5항"으로
 - 제40조의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 제41조제2항 중 "이자수입금의 범위"를 "전입금 및 이자수 입금의 범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면
 2022. 6. 8. 개정된「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의 법명 변경에 따른 것이고
 -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제5항"을 "법 제42조제5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조에서 "이하 법"으로 규정 되어 있어 법령 개정 및 자구수정에 대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안 제40조의2에서는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간 기한을 연장하고 제41조제2항 중 "이자수입금의 범위"를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 의 범위"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지난 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논의 되었던 양성평등기금의 필요성을 살펴 보면 기금조성 목표액이 31억 이었으나 2024년 현재 이자 수입을 제외하면 21억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금운영 성과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금운용실적이 2021년도 에는 90%인 3.600만원, 2022년도에는 85%인 3.400백 만원 이었음. 여성친화사업 및 기타 양성평등사업을 발굴하고 연중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비하여 신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금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기금의 필요 성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2023. 11. 기금운영 평가 시 양성평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현재수준으로 사업유지를 한다고 평가하였으나 사용범위를 이자수입금 이외에 전입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기금의 필요성이제고될 것임.

기타 제54조제10호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가족행복	김은숙	김지영
지원과	(8910)	(8921)

참고자료

1.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가의 출연금
 -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3. 기금의 운용수익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 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자료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 관련)

투명한 행정, 확실한 변화, 따뜻한 성장

ΜΛΩΩ.

마

五

구

人學是 即至 时轻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제1회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1. 예산정책과-2122(2024. 4. 9.)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2.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4년 제1회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1) 심의기간: 2024. 4. 3.(수) ~ 4. 5.(금)
- 2) 심의방법: 서면심의
- 3) 참석위원: 13명(당연직 10명, 위촉직 3명)
- 3) 심의결과: 아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2029. 12. 31.)은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함. 끝.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수신자 가족행복지원과장, 도로개선과장

2024. 4. 11. 주무관 예산정책과장 최자은 황신혜 남선옥

협조자

시행 예산정책과-2145 (2024. 4. 11.) 접수 가족행복지원과-9143 (2024. 4.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재정관리국 예산정책과

우 03937 / https://www.mapo.go.kr/ (성산동)

팩 스 02-3153-8549 / 19111806@mapo.go.kr / 대국민 공개 전화번호 02-3153-8055 번호

3.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구 분		<u>2020년</u>		<u>2021년</u>		<u>2022년</u>	
	합 계	2,191	100 %	2,196	100 %	2,192	10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수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입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146	98	2,162	98.5	2,160	98.5
	예수금						
	이자수입	45	2	34	1.5	32	1.4
	기타수입						
	합 계	2,191	100 %	2,196	100 %	2,192	100 %
	비융자성사업비	29	1.3	36	1.6	34	1.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지	기본경비						
출	예탁금						
	예치금	2,162	98.7	2,160	98.4	2,158	98.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_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